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에 스토킹범죄 피해 추가〉

■ 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95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참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
3. 회부연월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 라. (생략)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신설></u> 4. (생략) ② ~ ⑥ (생략)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2016년 5월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따르면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주민등록 변경 신청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¹⁾

[유형별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의결 현황]

(단위: 건)

	합계	재산			생명·신체			
		보이스 피싱	신분 도용	기타*	가정 폭력	상해 협박	성폭력	기타**
신청	9,146	4,670	1,049	1,746	808	449	242	182
의결	합계	4,183	948	1,435	731	411	227	170
	인용	3,712	635	480	675	321	197	69
	기각	460	304	938	53	87	30	99
	각하	11	9	17	3	3	0	2

*사기,해킹 등/ ** 명예훼손, 학교폭력 등

※자료: 행정안전부

- 1) 이를 신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변경 여부 결정 청구를 하고, 위원회는 90일(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시 45일) 이내에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요건]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법 제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등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4.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등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살인 중 일부), 제2호(약취·유인·인신매매의 죄 중 일부), 제5호(절도·강도 중 일부) 또는 제6호(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제311조(모욕)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²⁾에 따른 스토킹범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물건 등 전달, 정보 배포·게시 등을 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 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임.

첫째,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현제도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라 생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같은 법 제7조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4제1항 본문3)은 변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는 추상적인 요건인 반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토킹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건을 보다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주민등록번호 변경 입증자료]

구분	입증자료	발급기관
공통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판결문, 공판기록 등	법원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	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명세서 등	진료병원
	<u>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과 진술서, 수사기록 등을 통해 확인</u>	해당 수사기관 (검찰, 경찰)

※ 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둘째,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범죄자 처벌을 넘어서 신고 시 응급조치⁴⁾, 긴급응급조치⁵⁾, 잠정조치⁶⁾, 피해자등

3)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톱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톱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톱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톱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톱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톱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의 신원·사생활 누설 금지⁷⁾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명시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취지에서 법률간 일관성을 제고한다는 효과가 있으며, 최근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스토킹 신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	2021	2022	2023
112 신고건수	4,515	14,509	29,565	31,824

※자료 : 경찰청

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7)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 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변경에 관한 업무
3. 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기간연장·변경에 관한 업무
4.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스토킹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사법처리 현황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2021 [*]	1,023	880	818
2022	10,547	9,897	10,037
2023	12,084	11,601	11,512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21.) 이후 통계

※자료 : 경찰청

다만,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신청권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개정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으며,

개정안 부칙은 개정법률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이러한 시행 유예는 국민이나 시행기관에게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주려는 경우에 사용⁸⁾되는데, 개정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대상자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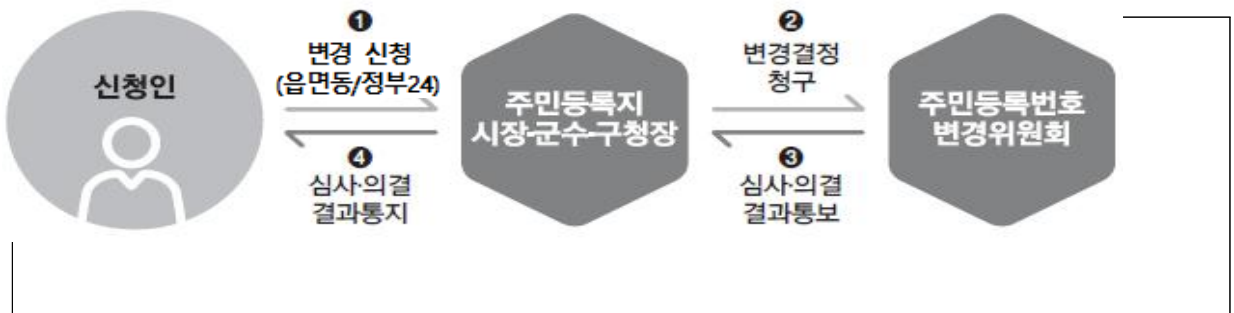
8) 「법제기준과 실제」, 국회법제실, 2024, p. 821.

문 의 처
02)6788-5334

[참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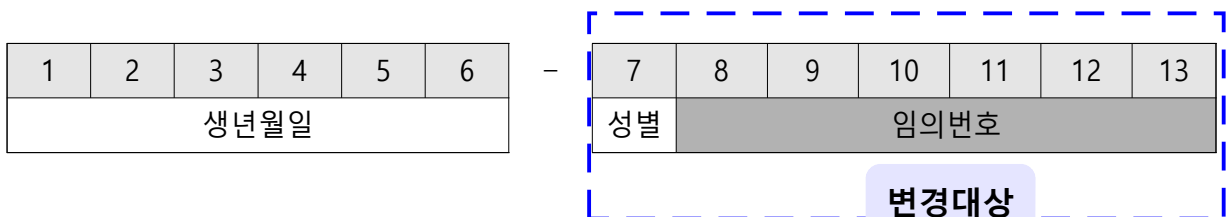
□ [위원회] 변경결정

- **(변경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재산 피해(또는 우려)자*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변경절차)** 신청인이 번호 변경을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
 - **(변경결정)** 변경요건 충족, 법령상 의무 회피* 여부 사실조사 및 심사
 -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시 45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범죄·경력, 체납,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주민등록법」 제7조의5, 「동법 시행령」 제12조의10)



□ [시·군·구] 변경처리

- **(번호변경)**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6자리에 대해 임의번호 부여



- **(변경통보)** 신규번호는 관할 읍·면·동에서 변경, 신청인에게 통지

- 28개 공공 시스템(건강보험, 세금 등)은 자동 연계 처리, 민간 영역(통신·금융 등)은 신청인이 직접 변경 조치